

## 1. 금융거래 실명확인업무 부당처리

## 2. 제재대상사실

「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」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하여야 하고,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부터 예금주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예금주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징구하여 확인하여야 함에도

2007.10.11.~2007.11.9. 기간 중 조합원 ●●● 등 총 16명을 신규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출자금 계좌를 개설(최초 입금액 : 각 계좌별 1만원)하면서 명의자 본인이 조합에 내점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내점하였음에도 본인의 위임장을 징구·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음

## 3. 제제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임원	주의적경고 1명
직원	감봉 : 1명

### < 관련법규 >

1. 「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」 제3조
2. 「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」 제3조
3. 「금융실명제업무기준」 II-3. 가.